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모사채총액인수약정서

20 년 월 일

인감대조

사채인수인(갑)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인)

주 소

사채발행인(을) (인)

주 소

사채인수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갑"이라 합니다)과 사채발행인 (이하 "을"이라 합니다) 사이에 인수금액 금 원정(W)의 사채총액인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 발행조건

① 을이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제 회 사채
2. 사채의 종류 : 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원정
4. 사채 발행가액의 총액 : 금 원정
5.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의 권면가액의 100%
6. 각 사채의 권면금액과 권종 : 금 원권(1종)
7. 사채의 이율 :
 - 가. 고정금리부 사채인 경우
사채발행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연 %로 합니다.
 - 나. 시장금리부 사채인 경우
시장금리() + %로 합니다.
 - 다. 기준금리부 사채인 경우;
기준금리(기업 CPR, CTPR, CSPR 등) + %로 합니다.
 - 라. 기 타 : 로 합니다.

② 사채인수 및 대금 납입 관계사항

1. 사채 인수일 : 년 월 일
2. 사채 대금 납입일 : 년 월 일
3. 사채 발행일 : 년 월 일

제2조 사채이율의 변동

① 「시장금리부 사채」라 함은 시장기준금리 또는 고시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동되는 사채를 말하며, 시장기준금리란 사채발행일 및 금리변경 적용일에 은행이 고시하는 직전영업일의 CD91일물(180일물), 금융채1년물, 산금채1년물, 회사채3년물, 국고채3년물의 유통수익률 중 고객이 사채발행 결정시에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시장금리의 변동은 아래의 변동주기와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주)한국씨티은행

CR-A-595 (2012.2)

3. 사채의 총액
4.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5. 사채의 이율
6. 사채의 상환 및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7. 채권의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8. 사채발행일
9.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10. 사채 지급 보증처
11. 기타 사채발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8조 사채원부의 작성

을은 사채권을 발행한 경우 사채원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채원부 사본을 갑에게 교부합니다.

제9조 사채권의 양도

- ① 을은 갑이 필요한 경우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 본 계약의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사채의 양도 시 양도인 및 양수인은 사채권에 기명날인하여 그 양도사실을 사채원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을은 변경된 사채원부의 사본을 즉시 갑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을이 변경된 사채원부의 교부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지급 또는 부정확한 지급 등에 대하여 을은 갑을 면책시키기로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손해 및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10조 재무제표의 제출

을은 매 결산일 후 2개월 내에 그 영업년도에 관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기타 부속명세서)를 갑에 제출하며 영업년도 중이라도 갑의 청구가 있을 시에는 갑이 요청하는 달의 월말 현재 시산표 등 을의 재무, 손익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제11조 약정의 변경 등

- ① 갑은 채권의 보전 상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을과 협의하여 이 약정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②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갑과 을간에 상호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제12조 약정의 위반 등

- ① 을이 이 약정서에 약정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반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갑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 또는 침해된 이익에 대하여 위약손해금을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위약손해금은 위약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잔여일수에 위약손해금율을(연 %)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

제13조 진술 및 보장, 기한전 변제 의무 등

- ① 을은 이 약정체결일 및 각 사채인수일에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1. 을은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 을은, (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나) 자기명의로 자산을 소유하고, (다) 이 약정에 따른 채무 기타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라) 이 약정 및 이 약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체결, 교부하며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을은 이 약정 및 이 약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체결, 교부하고, 그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업 내부의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4. 을은 이 약정의 체결, 교부 및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유효,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본인에게 이러한 인허가상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이 약정에 따른 을의 의무는 유효,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으며, 이 약정의 제조건 및 법률에 따라서 유효,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6. 을에 의한 이 약정의 체결, 교부 및 이행과 이 약정에 따른 을의 지급은 (가) 을에게 적용되는 어떠한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고, (나) 을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으며, (다) 을이 당사자이거나 을의 자산에 효력을 미치는 어떠한 계약상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당해 계약상 채무불이행사유를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7. 을의 재정상황 또는 을의 이 약정 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 소송이나 행정절차 또는 중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을이 아는 한 그러한 조사, 소송이나 행정절차 또는 중재가 제기될 우려도 없습니다.
 8. 을은 이 약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갑이 요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갑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

으며, 을이 아는 한 그러한 정보는 정확합니다.

9. 을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각종 지급의무를 이행할 자력이 있습니다.

10. 을은 각 사채발행일에 을 및 을의 자회사 전체에 대하여 영업, 재무상황 및 운영에 중대하게 불리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② 을은 이 약정에 따른 사채발행일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이 해당 거래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한전의 변제 사유
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 각 호에 기재된 사유
3. 제3항 각 호에 기재된 각 사유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5항에 따라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를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1. 을이 약정상 채무와 관련하여 갑에게 제공한 보증, 담보 계약 및 신용보강약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2. 을이 법원의 최종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있는 후에 그 판결 또는 명령에 따른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을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법하게 위 판결 또는 명령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을이 약정상 확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을이 약정에 따라 제공한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5. 을이 약정 외에 다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정에 따른 거래의 실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갑은 그로 인한 영업상 기대 이익의 상실 등 을의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 동의합니다.

⑤ 을이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갑이 손해, 손실, 비용 또는 채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4조 기타특약사항

본 인 :

(인)

--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	인	(인)
---	---	-----

(수입인지 첨부란)

--